

국가지능화 특집

AI와 국제통상: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및 시사점

이종용 • jongyl@etri.re.kr

김지은 • jekim0104@etri.re.kr

기술정책연구본부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국제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핵심동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제통상 관점에서 바라본 AI에 대해 검토한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이 갖는 비교우위 요소를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시사점으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측면에서 데이터 경쟁이 핵심이며,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측면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국가적 AI 정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 확산(knowledge diffusion)의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AI 산업정책과 국제통상정책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특히, 데이터 접근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국내정책은 무역장벽(trade barriers)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공공데이터 접근, 소스 코드(source code) 등 최근 디지털 통상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규범을 살펴보고, AI 정책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결론부로서 우리나라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내 전자상거래 규정들의 일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에는 AI 정책과 일관된 국제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신(新) 통상규범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제언하였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ETRI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데이터 기반 AI 기술의 비교우위 요소

현재까지 알려진 무역이론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환경을 아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의 경제적 특성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¹⁾ 본 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AI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지식 확산(knowledge diffusion) 또는 지식 외부성(knowledge externalities)을 기준으로 비교우위 요소를 파악하여 AI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AI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나타낸다. 즉, 가입자가 많을수록 데이터의 규모가 커져서 더 많은 가입자를 유인한다.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은 전화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매자-판매자로 구성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동차와 카센터와 같은 보완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AI 기술의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 특성으로 인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우수한 예측력을 갖게 되고 결국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환류 루프(positive feedback loop)를 형성하면서 AI 경쟁의 핵심은 데이터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다음으로 범위의 경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업은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응용 대상이 많을수록 자체 AI 연구팀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AI 선도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상품(multiproduct) 기업들이다. 구글의 경우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이 검색엔진(Google),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YouTube), 모바일 운영체제(Android), 자율주행분야(Waymo)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경제는 AI 전문인력, 우수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급측(supply-side)에서 발생되며, 브랜드 인지도나 판매 채널의 외부성을 토대로 수요측(demand-side)에서 구현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국제통상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AI 관련 범위의 경제의 핵심이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공유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엔진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유튜브(YouTube) 광고에 활용되거나, 지도서비스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공유는 프라이버시 정책과 연결되어 국가 간 통상마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국내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이 미국 기업들의 진출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마지막으로 AI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식 외부성의 범위는 확정적이지 않다. AI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이 대학강연이나 논문을 통해 일반에게 공유될 수 있고, AI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I 관련 지식 외부성의 범위는 글로벌 차원일 수 있지

1) Goldfarb and Trefler(2018),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rade", in Agrawal, A., Gans, J., Goldfarb, A. (eds),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Agen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만, AI와 관련된 지식이 이전이 쉽지 않은 암묵적 형태가 많아 AI 전문가들이 실리콘밸리와 같이 혁신의 중심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AI 정책을 통해 양성된 AI 전문가의 지식이 인력이동 또는 확산을 통해 국내가 아닌 경쟁국에서 상업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범국가적 AI 혁신전략의 이론적 타당성은 AI 관련 지식 확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AI 기술의 경제적 특성 측면에서 데이터 관련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가 중요하며,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서 지식 외부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외부성의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데이터 관련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지식 확산이 다른 외국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환경에서 국가 차원으로 추진되는 AI 진흥 전략/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AI 기술의 비교우위 요소별 특성		
구분	내용	특징
규모의 경제	◆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	데이터 확보 경쟁이 핵심
	◆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측력이 높아지고 다시 보다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는 환류 루프 형성	
범위의 경제	◆ 공급측 관련 범위의 경제	국경 간 데이터 공유 관련 통상마찰 이슈 발생
	◆ AI 관련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공유가 핵심	
지식 외부성	◆ 대상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지식 외부성 형태는 AI 정책의 효과성과 연관
	◆ AI 관련 지식은 대부분 암묵적 형태	

2 AI 산업정책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국가 간 AI 경쟁의 핵심은 산업정책을 통해 데이터 기반 AI 기술의 비교우위 요소를 선점하는 것이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은 AI 분야에서 자국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R&D 전략('18.5.),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1.) 등을 통해 AI 핵심 기술 확보 및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 경제 환경에서 인공지능 출현으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 태동기를 걷고 있다.²⁾ 본 장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표준, 지적재산권, R&D 보

2) The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s Asian International Economic Law Network (AIELN)



조금, 반독점(antitrust),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등 국가의 규제 및 산업정책이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AI의 핵심 원천인 데이터 접근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 국내정책은 무역장벽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³⁾ 이하에서는 최근 디지털 통상협상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규범⁴⁾인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공공데이터 접근, 소스코드(source code)에 대해 살펴보고, AI 정책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프라이버시 규제는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제한과 관련되어 기업의 AI 활용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이용에 대한 제한은 AI 이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현재까지의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데이터 활용자(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 능력을 제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가치관 또는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합리적 다양성의 존재는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메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인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는⁵⁾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기여를 강조하고, 규제 체계의 통합보다는 정보교환 노력 및 국가 간 호환성(compatibility)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느슨한 국가는 엄격한 국가에 비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게 되어 AI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어떤 국가의 규제수준 강화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AI 기업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조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국내규제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주요국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비식별정보(가명정보) 모두에 대해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그러므로 AI 산업 성장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수준이 최적으로 완

(2019.10.), The 6th Biennial Conference.

3) KOTRA(2019.4.), 2019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주요국 무역규제 분석.

4) 국가 간 체결하는 조약의 성격을 갖는 국제통상협정에 포함된 규범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5)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Electronic-Commerce.pdf>.

6) 2019년 11월 기준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임.

화되어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을 최대한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이상적인 수준에 대한 탐색은 혁신 극대화를 통한 국내 AI 산업 성장과 더불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윤리적 가치 존중이 서로 균형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데이터 현지화

데이터 현지화는 기업이 국내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구글 및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가 활발한 상황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는 국내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주게 되어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상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관련 규범은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의무화하는 규범과 컴퓨팅 설비(서버) 현지화 금지 규범이 있으며, 이는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PTPP 전자상거래 챕터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조치를 허용하면서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사업수행 조건으로 당사국 컴퓨팅설비 이용 및 설비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의무규범을 채택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통합이 요구되는 AI 관점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데이터의 규모가 특정국으로 한정된다면 AI 예측력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달리 데이터 현지화는 AI 분야 외국기업이 국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차별적 조치로 지적되어 통상마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위장된 무역제한(disguised restrictions on trade)을 구성할 여지가 있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통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데이터 접근

공공데이터 접근은 사회문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의료, 교통, 환경, 복지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관리되고 있는 정부·공공의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⁸⁾ 국회에서 법안 심사 중인 데이터 3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금융, 교육 관련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분야의 신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공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통상규범은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7) 이규엽 외(20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18.

8) 심진보 외(2017),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과 통찰, IDX,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ETRI Easy IT.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와 미일 무역협정⁹⁾에서 포함되었다. USMCA에 포함된 공공데이터 규범은¹⁰⁾ 정부 데이터 접근 및 이용 촉진이 경제·사회 발전, 경쟁과 혁신에 긍정적임을 인정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하면서 오픈포맷(open format)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의무수준은 낮지만, CPTPP에서 조차 포함되지 않은 신규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통상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내 사업자에 한정하여 허용할 경우 국내 AI 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공공데이터 접근에 대한 예외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 간 관계가 국가별로 다양할 수 있어서 데이터 접근 정책에서의 합리적인 다양성이 국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캐나다와 미국 간 연질목재(softwood lumber) 분쟁을 살펴보면, 전체 목재생산의 70%가 사유지에서 생산되고 목재생산자가 산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입목벌채수수료(stumpage rates)가 경매방식으로 산정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 소유지(Crown land)에서 목재가 주로 생산되고 법에 근거한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통해 입목벌채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여기에 대해 미국이 캐나다 정부가 자국 목재산업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었다.¹¹⁾ 이것은 정부 보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공정한 가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규제 차이가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통상법을 위반하는 보조금을 구성한다는 것이므로 공공데이터 접근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UN의 SNA93 기준, IMF의 GFS 기준, UN의 ISIC 기준 등이 이용되고 있어서 국가별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념 정의와 포괄범위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¹²⁾ 국제통상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접근 이슈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공공기관 범위 다양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소스코드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영업비밀이므로 소스코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특히, 국제통상 분야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소스코드(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관행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스코드 공개 금지가 신규 규범으로 채택되고 있다. CPTPP

9)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19_Digital_Trade.pdf.

1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japan/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Japan_concerning_Digital_Trade.pdf.

11) <https://aacb.com/facts-to-understand-about-softwood-lumber-dispute>.

12) 정재하(2005), 공공부문의 범위와 고용변화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는 전자상거래 챗터에서 자국 시장 내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의 수입·유통·판매·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해외 사업자가 보유한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범을 도입하였다. 다만, CPTPP의 소스코드 요구 금지 규범은 상용 민간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중요한 인프라에 사용되는 정부조달 제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요구, 상업적 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국내 법령 준수를 위한 소스코드의 변경요구 등은 허용하고 있다. CPTPP와 유사한 규범을 채택한 USMCA의 디지털통상 챗터는 소스코드 외에 소스코드에 포함된 알고리즘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AI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대국 정부가 법에 근거하여 AI 예측에 활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AI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상대국 정부가 기만행위 방지 또는 국가안보 보호를 이유로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 및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여 외국 정부가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할 경우 국내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소스코드 공개 금지는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규범이고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제에서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스코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의 통상협상에서 해당 규범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 국제통상 협정문 내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 채택 현황

구분	프라이버시	데이터 현지화		공공데이터 접근	소스코드 공개 금지
		국경 간 정보 이동	컴퓨팅설비 현지화		
CPTPP	●	●	●		●
USMCA	●	(Negative formulation: No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금융서비스 적용배제) (예외 조항 미포함)	◐	● (상용 SW 한정 미포함) (알고리즘 추가)
미일 무역협정	●	(Negative formulation: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금융서비스 적용배제) (예외 조항 미포함)	◐	● (상용 SW 한정 미포함) (알고리즘 추가)

* CPTPP, USMCA, 미일 무역협정의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협정문 참조

* ● : 의무조항, ◐ : 노력조항

3 AI 산업정책 대응 통상협상을 위한 시사점

2001년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이후 신규 다자간 협상 부재, 국가안보에 근거한 자국 경제주의(economic nationalism) 확산과 분쟁 중재자로서의 WTO의 역할 상실위기 등 최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일련의 무역환경 변화로 인해 WTO



주도 다자간(multilateral) 무역체제는 점차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¹³⁾ 대신에 다자간 협정을 보완하기 위한 WTO 내 분야별 복수국 간 협정¹⁴⁾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양자·복수국 간 지역무역협정이 중첩되는 다층(multi-layered) 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6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최근 협정문 타결선언이 이루어진¹⁵⁾ ‘메가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가치사슬 강화와 한-일 FTA 및 한-중-일 FTA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AI,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신기술은 국내 경제시스템(생산·유통·소비) 변화 및 국가 간 교역활동에 혁명적 변화(비용감소, 데이터 기술 중심의 비교우위 변화, 교역대상, 교역주체 등 무역패턴 변화)를 야기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진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현지화, 반경쟁 효과(anti-competitive effects) 등 부정적인 요인도 낳고 있다.¹⁶⁾ 따라서 세계 각국은 디지털 신기술의 긍정적 요인을 촉진하고 부정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무역규범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WTO 차원보다는 양자·복수국 간 FTA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통상 규범이 정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6개 기체결 FTA¹⁷⁾ 중 11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챕터 내 개인정보보호, 국경 간 정보 이동, 컴퓨팅설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등 앞 장에서 살펴본 AI와 관련된 규범들의 채택 현황은 입안자-추종자(framer-follower: FF) 접근¹⁸⁾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FF 접근은 기체결 FTA 내 전자상거래 규정의 포트폴리오에 일관성 존재를 파악한다. 일관성이 확인된 규정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 협상 당사국이 입안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규정은 우선순위가 낮아 협상 당사국이 추종자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한다. 즉 입안자는 해당 규정의 포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종자는 우선순위가 높은 규정 채택을 위해 협상 상대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FF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11개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 포함된 규정들의 일관성을 확인해본 결과, 전자적 전송 무관세,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협력(cooperation) 규정에서만 높은 수준의 일관성이 확인되었고,

13) 제현정 외(2019),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한국무역협회(KITA), 통상리포트.

14)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공정거래 기반구축,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통상규범 정립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19년 11월 기준 81개국이 참여 중임.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1.), 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16) WTO(2018), World Trade Report 2018: The future of world trade: How digital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global commerce.

17)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s://fta.go.kr/main>) 참조

18) Kim(2019), E-Commerce in South Korean FTAs: Policy priorities and provisional inconsistencies, World Trade Review, Vol. 18, No. 1, pp. 85-98.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장래 잠재적 협상 상대국에게 압박카드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기체결 FTA 내 전자상거래 규정에서의 일관성 부족은 국내 사업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하여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의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포트폴리오에서 일관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AI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기체결 FTA에 반영되어 있다. 국경 간 정보 이전은 한-미 FTA에서 노력조항으로 포함된 것이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FTA 협상에서 국내 AI 산업 활성화 정책과 일관된 통상정책 추진을 지향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규범뿐만 아니라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 디지털 신(新) 통상규범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표 3 우리나라 기체결 FTA 내 전자상거래 규정 채택 현황

체결국 규정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전자적 전송 무관세	○	○	○	○	○	○	○	○	○	○	○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	×	×	○	×	×	×	×	×	×	○
국내규제 프레임워크	×	×	×	×	×	○	×	×	○	×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	○	○	○	○	×	○	○	×	×
온라인 소비자 보호	×	×	○	○	○	○	○	×	○	○	○
종이 없는 무역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	×	○	○	○	○	○	○	○	○	○
국경 간 정보 이동	×	×	×	○	×	×	×	×	×	×	×
협력	×	○	○	×	○	×	○	○	○	○	○
스팸메시지 규제	×	×	×	×	×	○	×	×	×	×	×

* Kim(2019),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참고하여 재작성

* ○ : 해당 전자상거래 규정 포함, × : 해당 전자상거래 규정 미포함



www.etri.re.kr

본 보고서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에서 수행 중인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사업을 통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TEL.(042) 860-6114 FAX.(042) 860-6504

